

본 자료는 2014년 2월 26일(수)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인터넷 보도 : 2월 25일(화) 오전 11시 이후)

<b>보 도 자 료</b>	<b>주택산업연구원</b>
정책연구실	kemfkim@khi.re.kr kje2012@khi.re.kr
김태섭 연구위원 김지은 책임연구원	02.3215.7671 02.3215.7670

총 14 매 (별 첨 : 12 매)

##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통해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회분위기 확대 필요”

-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보육문제 해결의 어려움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현실에서, 보육비가 저렴하며 아동폭력 등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주택산업연구원(원장 南熙龍)은 한국주택협회(회장 박창민) 요청에 따라 진행한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국가·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 (보육문제 해결의 어려움으로 출산 기피)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경제환경과, 출산 이후부터 유치원 입학 전까지의 보육문제로 맞벌이를 하기 힘든 사회환경이 상충되어, OECD 국가 중에서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보육시설 운영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육비용 저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및 방향)** 국공립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에 비하여 보육료가 저렴하고 각종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선호도가 높으나, 2012년 현재 전체 어린이집 중 차지하는 비율이 5%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절대량이 부족하여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어렵고, 이는 외국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따라서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설치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하는 것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다.
-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건물매입 및 신축을 할 경우 평균 1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등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지자체별로 재정여건이 달라 그 부담이 더욱 클 수 있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개소 당 평균 1.6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할 수 있다.
- **(사회적 요구 및 법률 개정)** 최근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관련법령에도 반영되었다. 2013년 8월 13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2014년 2월 11일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제안)** 첫째, 주택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정하고, 이를 입주자모집 공고에 명시토록 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감소시켜야 한다. 둘째, 입주자의 사유 재산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무상임대함에 따라 불거지는 재산권 침해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거주 아동의 입소우선권 부여와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감면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자체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단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별 첨 :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요약본)**

#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방안

- 요약본 -

2014. 2. 25

김태섭 / 연구위원

김지은 / 책임연구원



住宅産業研究院  
KOREA HOUSING INSTITUTE

# < 목 차 >

<b>I. 서론</b> .....	<b>1</b>
1. 연구배경 .....	1
2. 연구목적 .....	1
<b>II. 개정법률</b> .....	<b>2</b>
<b>III.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b> .....	<b>3</b>
<b>IV.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및 사례조사</b> .....	<b>4</b>
1.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	4
2. 현재 추진 중인 신축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	5
3. 해외 국공립보육시설 사례 .....	8
4. 시사점 .....	8
<b>V.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법제화 방안 제시</b> .....	<b>9</b>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주요 쟁점 및 대안 .....	9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	10

# I. 서론

## 1. 연구 배경

- 맞벌이를 하지 않고는 살아가기 힘든 경제 환경과, 출산 이후부터 유치원 입학 전까지의 보육문제로 맞벌이를 하기 힘든 사회 환경이 상충되어,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나타냄
- 사회적으로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아직 미흡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각종 아동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출산율 증가와 사회적으로 양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때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매우 필요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은 지자체의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임. 보육료 지원이후 보육재정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성의 제고가 더욱 요구되고 재정규모의 확대 효과를 더욱 크게 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더욱 절실함.
- 최근 국회에서 주택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서울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보육문제를 민간의 '수익사업'형태가 아닌 '공익사업'으로 접근하는 인식전환이 미흡하고,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기 위한 제도마련은 미비한 상태임

##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외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 마련 및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Ⅱ. 개정 법률

### ▣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 2013년 8월 13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대상에 공동주택단지를 포함
  -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기존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에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 2014년 2월 11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세대수를 500세대로 규정
  -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란 500세대를 말한다.”는 내용을 신설함

〈표 1〉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신규조문대비표

영유아보육법 [시행2014.2.14] [법률 제12068호, 2013.8.13 일부개정]	
종 전	개 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_____ _____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_____.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2014.2.14] [대통령령 제25164호, 2014.2.11 일부개정]	
종 전	개 정
〈신 설〉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란 500세대를 말한다.

### Ⅲ.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방안

#### ▣ 서울시는 가장 적극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 ○ 서울시 비용절감형 모델

- '비용절감형 서울모델'의 주요 방식은 ▲민관연대(기업, 종교단체, 학교, 개인 등 민간 부지) ▲공공기관(유휴공간 활용) ▲공동주택(내 설치) 임
- 1,583억으로 총 209개소 확충 결정(개소당 평균 7.6억, 이중 84개 개원)
- 건물을 매입하여 신축하면 약 18.9억 소요, 그러나 공동주택 내 설치하게 되면 개소 당 평균 1.6억 원으로 비용 절감 효과 극대화)

○ (서울시 입장) “무상보육이 시작되면서 보육은 이미 공적영역으로 들어왔다. 무조건적인 재정투입보다는 국공립 확충 등 보육의 공적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학부모들이 믿고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질적 관리도 강화해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의지 표출

○ (민간건설사와 협력 적극 추진) 서울시는 삼성래미안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우선 확보되도록 지난해 11월 (주)삼성물산과 업무협약을 체결, 500세대 이하 민간건설사 공동주택에서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건설사와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

〈표 2〉 2012~2013년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용

구 분	계	민관연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건물매입 리모델링	매입신축	신축	민간매입
개 소 수	209	71	29	51	15	26	8	9
비 율(%)	100	33.9	13.9	24.4	7.2	12.4	3.8	4.3
지원금액(억)	1,583	325	177	81	257	491	134	118
개소당 지원금액(억)	7.6	4.6	6.1	1.6	17.1	18.9	16.8	13.1

자료 : 서울시

※ 매입신축: 토지구입비+신축비, 신축: 구유지 무상제공+신축비

1) '희망의 노랑새'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올해 97개소 개원, 서울시 보도자료(2014.1.23)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 인식 및 지자체별 계획

〈표 3〉 지자체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

구분	계획안	세부 확충계획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까지 전체 시설의 30%, 현재 이용 아동의 2배까지 국공립이 보육</li> <li>○ 행정동별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이상 설치</li> <li>○ 민간 연대 확충 사업 공모</li> <li>○ 사회참여 확대</li> <li>○ 주거지 인근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li> <li>○ 취약보육 실시로 맞춤보육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충계획에 의거, 재정여건에 따라 70~90% 시비지원</li> <li>- 기업이 공간의 기부채납, 무상임대 등 일부를 부담하면 해당 기업 아동을 일정비율 우선입소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부여</li> <li>- 의무보육시설이 없는 아파트 단지, 특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2006.1.6)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중에 어린이집 설치를 원하는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li> <li>- 건물 기부채납 또는 무상 임대시 시에서 리모델링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거주 아동 우선 입소와 최초 운영권 부여, 놀이터 정비혜택</li> </ul>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까지 10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어린이집이 시급히 필요한 신도시나 농어촌, 저소득층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신축</li> <li>- 중앙정부가 주로 추진하는 민간건축물 및 공공기관 매입 리모델링과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li> <li>- 인천대 도서관 활용과 도서관 건물의 장기 무상임대 등</li> <li>- 신규 민간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을 임대하거나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 추진. 신규입주 일반분양 주택단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68개소로 이중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 설치 예산은 1개소당 총 340백만원으로 2015년까지 총 1,700백만원 소요</li> </ul>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어린이집의 아동 부담율을 11%까지 높이기 위해서 매년 30개소씩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신축</li> <li>-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및 시군구비 자체 예산,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추진</li> </ul>

자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원(2012), 재정리

## IV.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및 사례조사

### 1.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 국공립어린이집은 2012년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5.1% 수준임. 전체 어린이집 수는 2000년 19,276개에서 2012년 42,527개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은 2000년 1,295개에서 2012년 2,116개로 전체 어린이집 증가율에 미치지 못함
- 국공립어린이집은 무상임대(73.3%) 비율이 가장 높고 자가(16.8%), 기타(8.7%), 전세(0.4%) 순서임 . 무상임대 또는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 신축이 어려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쉽지 않음
  - 대부분의 영유아는 가정어린이집(24.6%)과 민간어린이집(51.9%)에서 보육됨. 맞벌이 부부의 경우 출산휴가 이후부터 영유아 보육시설이 필요한데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시설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서울(11%)이 가장 높고, 부산(8%), 강원(7%), 전남(6%), 전북(6%) 순이며, 대구, 광주, 대전은 각각 2%로 가장 낮음. 2011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1,022읍면, 938개동 총 1,960개 지역으로 전체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4배가 넘는 수치임
  -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충족율은 평균 93%로 전체 어린이집 평균 86.8%보다 5%이상 높음
-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가운데 26.7%는 2012년 현재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음
  -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평균 정원은 41.2명임, 적은 인원때문에 연령별로 한 반을 구성하기 힘이 들고, 혼합 연령반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함. 어린이집 운영 시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이 들며, 원아들이 향후 다른 시설로 이동하게 되는 원인이 됨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만1세~만5세까지 각 반이 구성될 수 있는 적정 규모가 필요함
-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의 방향
  - 무상임대시설 운영 및 임대기간의 장기성 확보 필요
  - 모든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필요

- 영아를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필요
-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어린이집 정원 계획 필요

## 2. 현재 추진 중인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 1)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증가

-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대부분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되어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급률은 매우 낮은 편임. 그러나 최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여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유치한 후 분양하는 단지가 증가<sup>2)</sup>
  - 국공립어린이집이 단지 안에 있고, 자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어린 자녀를 둔 30~40대 부모들 에게 인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 믿고 맡길 수 있고,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안전함이 젊은 부모 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됨

〈표 3〉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사례

아파트 단지	내용
성동구 옥수리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옥수 12구역 재개발 사업지역에 정원 102명 규모의 어린이집(3년 무상임대)</li> <li>○ 성동구는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li> <li>○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순위 내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의 아이들 대부분 입소하였으며, 단지 내 거주 아동 가운데에서도 제한된 정원 규모로 다니지 못하고 있음</li> </ul>
마포구 래미안 웰스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개발지역에 들어서는 구입어린이집(마포구 소유)</li> <li>○ 기존 재개발 부지 내 구입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재개발시에도 구입어린이집 설치. 기존 구입 어린이집 수요와 재개발로 인한 신규 수요를 고려하여 대규모 어린이집을 신축</li> <li>○ 조합이 대지와 신축비용을 제공하여 구입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이를 마포구에 기부채납(무상제공) 함에 따른 인센티브로 용적률 상승 및 일반분양분 추가혜택을 받음</li> </ul>
신동탄 SK 파크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가 120명 규모의 시립어린이집 신축을 화성시에 제안. 시립어린이집은 준공 후 입주자 과반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 2014년 1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음</li> <li>○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되면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 협조를 구함</li> </ul>
래미안 강동팰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가구의 99%가 중소형으로 구성, 연면적 448㎡, 최소 59명을 수용하는 구입어린이집</li> <li>○ 강동구와 단지 내 구입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입주민 자녀에게 우선배정권을 보장한다는 협약 체결</li> <li>○ 강동구는 2013년 2월 신축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지원금 자치구 부담률을 115%까지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함</li> </ul>

-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경우 젊은 부모들이 몰리면서 인근 아파트보다 2~3000만원 가량 높은 시세를 형성, 해당 국공립어린이집 입학 확률이 높아 인기가 있음. 이를 반영하여 건설업계에서도 국

2)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갖춘 아파트 속속 등장, 2013.6.17 파이낸셜 뉴스

공립어린이집 유치가 진행 중임<sup>3)</sup>

## 2) 현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쟁점사항

〈표 4〉 현재 추진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쟁점사항

문제점	내용
무상임대 조건과 입주민의 이해관계	① 조합과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어린이집 운영 및 임대 등의 항목에서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통해 결정</li> <li>○ (분양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K 신동탄 파크 뷰의 경우 건설사가 제안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 이후 결정</li> </ul> </li> <li>○ (조합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포구 웰스트림의 경우는 기존 재개발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유지·신축하는 조건으로 조합원들이 대지와 건축비 등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 이에 상응하는 용적률 확충과 분양세대수 증가를 받게 됨</li> </ul> </li> <li>○ (입주자대표회의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동구 옥수리버전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찬성에 의해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서게 됨</li> </ul> </li> </ul>
	② 입주자의 이견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거주 아동 100% 입소를 전제로 무상임대 되고 있음</li> <li>○ 입소비용 조건이 변경되면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li> <li>○ 조합의 결정시기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시기 및 당사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함</li> </ul>
	③ 무상 임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단기계약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적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사용가능성이 없는 입주자 중에서는 향후 이견을 제시할 수 있음</li> <li>○ 입소비용 규정시 입주민들이 무상으로 임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큼. 사유재산으로 생각하는 본인들의 단지가 외부 거주하는 아동들의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거에 대한 반대 가능성</li> </ul>
	④ 주민 의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문조사 응답율은 찬성(89.8%)이지만 전체 세대수 대비 51%에 불과함. 과반수를 겨우 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향후 반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li> </ul>
지자체의 재정 지원 및 운영 및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자체별 재정상황 차이</li> <li>○ 시설 운영의 번거로움과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성이 지자체를 끌어들이기 힘든 요인이 될 수도 있음</li> </ul>

## 3. 해외 국공립보육시설 사례

- 대부분 공공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지원, 운영

3) ‘건설업계, 국공립어린이집 모시기 왜?’, 2014.01.07 헤럴드 경제

- 공공의 경우 종교단체, 비영리 법인, 비영리 개인에서 운영
- 민간의 경우도 상당수는 자원기관에서 운영

〈표 5〉 해외 국공립보육시설 현황

구분	특징
미국	○ 미국 보육시설은 정부를 통한 행정지원 비율은 낮음 ○ 그러나 종교단체,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개인 등에 의한 행정 등 비영리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비율은 모두 65%에 이르고 35%만이 영리 시설임
일본	○ 자녀양육을 지역사회가 지원, 자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정책 추진 ○ 민간은 90%가 사회복지 법인에서 운영하며 1.9%만 개인이 운영함(최근 공공보육소의 민영화 추진)
영국	○ 보육서비스 공급주체는 공공보다 민간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민간의 상당수는 자원 기관임(종일제 시설의 경우 공공기관은 단지 11%만을 운영하며, 87%는 민간인데 비영리 자원기관이 22%를 담당)
스웨덴	○ 보육의 책임은 국가, 사회, 기업주의 공동책임 하에 분담한다는 기본방침 ○ 공보육 대상은 12세 이하의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공립시설과 공립가정보육시설을 합하면 80%이상이고 민간시설은 10% 미만이며, 민간단체의 경우에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음)
프랑스	○ 프랑스는 보육이 특수계층만이 아닌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원칙하에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공립 영유아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기관의 설립허가 및 운영업무도 지방정부로 이관되는 추세임
독일	○ 보육시설 유형에 상관없이 주정부와 지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보육료 부담은 가정의 수입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비교적 저렴함 ○ 독일은 사립시설의 상당부분이 비영리기관이며, 교회단체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음

기획재정부(2011), 우리나라의 보육실태와 외국사례 -공립보육시설, 보육비용 지원, 양육수당을 중심으로-, 김승권 외 5인(2000), 「유아보육서비스 실태분석과 종합대책 수립연구」,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용 재정리

#### 4.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

- 우리나라 국공립보육시설 비중 절대 부족 및 개인 민간 공급자에 의한 보육중심
  - 우리나라는 공보육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으나 아직 현실적으로 민간에 의한 영리목적의 어린이집이 많은 상태이며, 외국과 비교할 때는 더 열악한 상태임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 증가
  -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확대, 보육 아동 비율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축 공동주택 단지를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매우 바람직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은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에서 최근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방식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수요에 따른 지역별 차별화, 도시지역 중심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관점에서는 매입이나 신축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늘릴 수 있는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바람직함
-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확대되고 있으며, 영육아보육법 개정으로 향후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V.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법제화 방안 제시

###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주요 쟁점 및 대안

-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사항
  - 현재는 입주자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단계에서 결정될 수 없는 상황
  - 지자체의 재정부담
  - 단지 내 입주민의 동의와 입소비율
  - 사유재산을 무상임대하였기 때문에 입주민의 의견이 강함(단지 내에서도 다양한 이견 발생 가능)
  - 장기 무상임대 조건 확보 필수
- 대안
  - 사업계획단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정
  - 입주자 협조의무
  - 재정부담 완화 방안
  - 입소우선권 부여
  - 추가 인센티브 부여

##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방안

〈표 8〉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주요 쟁점 및 대안

쟁점	대안	향후 법제화
우선적 설치 판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공립어린이집 필요성에 입각하여 지역의 여건(어린이집 수요와 공급상태)과 주택단지의 여건(단지규모와 중소형 주택비율), 저소득층 주택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li> </ul>
사업계획단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사업주체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협의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시 관련 내용 공지토록 명문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li> </ul>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당 사업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li> <li>- 용적률 산정시 해당 어린이집 면적을 감면</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법</li> <li>- 건축법 시행령</li> <li>- 지자체별 심의기준</li> </ul>
입소우선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단지 내 거주아동 우선입소, 단,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결원 발생 시 인근 지역 거주 아동에게 입소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보육법</li> <li>- 영유아보육법 시행령</li> </ul>
추가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등을 할 경우 유인책으로 입주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특례제한법</li> </ul>

〈표 9〉 종합

사업계획단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정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개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 주민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 제9호 개정 9.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내용(주민운동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와 수를,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지 여부를 포함한다)
우선적 설치 판단기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제8항 신설 ⑧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인근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현황 및 저소득층 밀집주거지 여부 2.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이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인지 여부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용적률 인센티브	건축법 시행령 (제1안)	제6조(적용의 완화) 제1항제12호 신설 12.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영유아보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주택법 (제2안)	제38조의6(주택건설사업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등) 제1항제3호 신설 제38조의6(주택건설사업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등) ①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임대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에 관한 사항
	지자체별 심의기준	신축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 산정 시 포함
해당 단지 거주아동 우선 입소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1안)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개정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p>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p> <p>②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단지 주민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명시하여야 한다.</p> <p>『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보육의 우선 제공) 개정</p> <p>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말한다.</p> <p>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 주민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보육 정원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영유아보육법 (제2안)	<p>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3항 신설</p> <p>③ 제12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 주민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보육 정원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 제한법	<p>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3항 신설</p> <p>③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단지 지역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거나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한 자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